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안내문



- 1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제41조의2 신설)에 따라 '21. 6. 9.부터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란?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산재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공단이 확인해 주는 제도

- 3 고객님의께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 중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결과, 반환금(과다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접수방법: 우편, 팩스, 공단 내방 접수 모두 가능

제 출 처: |서울, 강원지역| 서울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 02-2097-9220, 9214, 2230-9795)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케어빌딩 9층 (팩스접수) 0502-608-2204

|부산, 경남지역| 부산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 051-661-0295, 0269)
(48731)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아모레퍼시픽 4층 (팩스접수) 0502-608-2205

|대구, 경북지역| 대구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 053-601-7163~5)
(41948)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경일종합금융빌딩 7층 (팩스접수) 0502-608-2206

|인천, 경기지역| 경인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 032-451-9352, 9361)
(21556)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13층(미추홀타워) (팩스접수) 0502-608-2207

|광주, 전라지역| 광주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 062-608-0151, 0155)
(61925)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 생명빌딩 10층 (팩스접수) 0502-608-2208

|대전, 충청지역| 대전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 042-870-9567, 9543)
(35209)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6층 (팩스접수) 0502-608-2209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에 대한 Q&A



Q.1

공단에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확인 요청을 하면 비급여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킨 경우에 환불대상이 됩니다.
-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불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공단에 요청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확인 결과, 의료기관에서 과다 청구한 금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A. 과다본인부담금(환불결정금액)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에게 의료기관이 직접 환불 조치 하도록 공단에서 의료기관에게 통지합니다.



Q.3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났는데도 의료기관에서 환불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께서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 다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해지, 휴업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환불이 지연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이송료, 간병비 등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확인 대상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상 비급여 진료비에 한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확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과 관련된 진료비용이 아닌 경우
- ② 진료계획, 전원 등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진료비용인 경우
- ③ 화장품, 의약 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비용
- ④ 간병,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 ⑤ 약국 약제비
- ⑥ 소멸시효 완성 등 확인 제외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